

# 예 산 총 칙

2007년도 [ 3회추경 ]

제 1 조 : 2007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	계	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총	계	계	772,724,591	23,181,738
일	반	회	611,466,153	18,343,985
특	별	회	161,258,438	4,837,753
	공 기 업	특 별 회 계	23,858,675	715,760
	상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23,858,675	715,760
	기 타	특 별 회 계	137,399,763	4,121,993
	하 수 도 사 업	특 별 회 계	16,098,186	482,946
	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	특 별 회 계	73,223,322	2,196,700
	의 료 보 호 기 금	특 별 회 계	3,760,478	112,814
	새 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	특 별 회 계	845,451	25,364
	구 획 정 리 사 업	특 별 회 계	267,704	8,030
	도 시 개 발 사 업 비	특 별 회 계	32,854,969	985,649
	주 택 사 업	특 별 회 계	1,709,521	51,286
	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	특 별 회 계	632,986	18,990
	경 영 사 업	특 별 회 계	295,000	8,850
	공 유 수 면 매 립 사 업	특 별 회 계	1,250,083	37,502
	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	특 별 회 계	174,329	5,230
	공 업 용 지 조 성 사 업 위 수 탁	특 별 회 계	1,464,828	43,945
	주 차 장	특 별 회 계	4,822,906	144,687

제 2 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: 2007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7,4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6,371,367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인건비
2. 복리후생비
3. 반환금 및 기타
4. 지방채상환 원리금
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

제 7 조 :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.